공직선거법위반

[인천지방법원 2012. 11. 23. 2012고합1117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피고인1외1인

【검 사】박영빈(기소, 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황정근 외 1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 1(대법원 및 항소심판결의 피고인)을 징역 8월에, 피고인 2(대법원판결의 공소외 2)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. 다만,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2로부터 16,500,000원을 추징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